제310회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부록)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8월29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제안설명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은 결산 심사를 정기국회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위해 6월 국회를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날까지 완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산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이 일반상임위원회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처벌된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여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을 정보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교섭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제3항).

둘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

아무쪼록 본 법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2)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2년 6월 21일 본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시정조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 중' 또는

'내용검토 중'으로 국회에 보고됨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결산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계획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이를 파악하고 그 처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관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처리계획과 그 처리결과를 각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안 제84조제2항)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계·자구심사제도는 법률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 및 체계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간단한 내용의 법률안이라도 필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을 계류시킴으로써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체계·자구에 대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함은 물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37조제1항제2호)

둘째, 각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과정에서 소속위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처 내 법제전담기구에 해당 법률안에 관한 체계와 자구의 검토를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8조제9항)

셋째, 소관 위원회로부터 체계와 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받은 국회사무처 내 법제전담기구는 검토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전담기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넷째, 의장은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에 관하여 법률안의 위헌 가능성, 다른 법률에의 저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6조제3항 신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이 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익산 갑 출신 이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 가운데 법률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대 행정의 전문화·복잡화 추세 속에서 행정입법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제·개정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정부의 자의적 행정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입법의 국회제출과 검토 및 통보제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에의 합치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동의(動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법률에 합치되지 않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통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가진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적실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검찰이 외부환경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온 반면에 최근 들어 검찰의 정치화 및 과도한 수사,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검찰중립화는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것임이 궁극적 목적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검찰중립성 확보 못지않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의기관인 국회가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서 관련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이나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3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겸직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회법은 법률로 금지하는 일부 직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게 되는 경우에 국민의 대표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으며, 또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어 헌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국익 우선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행정부와 입법부의 가교역할이 주 임무인 특임장관과 같은 일부 정무직이나 비영리공인 법인 및 단체의 임원, 공익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만을 위한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용하며, 이를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인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1항)

둘째,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2항)

셋째, 국회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3항)

넷째, 안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4항)

다섯째, 국회의원이 안 제2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5항)

여섯째,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하였습니다.(안 제29조제6항, 안 제155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층 더 두터운 신뢰로서 다가가기 위한 본 법안의 취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 박남춘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해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진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상 징계 사유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부수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64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에 정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도 매번 쟁점사항으로 인해 여야 간 폭력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심사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위원추천을 전적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자문위 운영의 공정성 및 실효적인 자문에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법률안은 자문위 위원 추천권한 자체를 외부인사에게도 확대하여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징계요구 의원 정족수의 완화, 징계심사 기한의 설정, 징계회의의 공개 등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정계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 내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정치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직접 설명드리지 못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철도, 서울춘천고속도로, 거가대교, 지하철 9호선 등 대형 민자사업의 먹튀 논란이 국민적 불신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형 민자사업에는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공사비 부풀리기', '비싼 사용료 책정', '수요예측 오류로 인한 국가 재정 낭비' 등이 반복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의 불신과 국가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투입되는 국가 예산(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다뤄지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 방식 중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국회의 총한도액 의결을 통해 재정통제가 가능한 반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회의 예·결산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을 보완하여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하여 법 제7조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및 국회법 제84조의 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따라 국회에서 예산심의 의결 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해서는 관련 조항이 없는 관계로 민간투자법에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회법에도 제84조 5(수익형 민자사업 재정지원 등의 회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을 포함한 20인이 고심 끝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회 재정통제 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입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사유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징계에 대한 회의도 비공개로 되어 있기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것으로 학계, 시민단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를 통해 논의된 결론을 법안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회법에 규정된 기한인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3일 이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원구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제13대부터 18대까지의 원구성기간은 평균 44일이 걸렸습니다.

원구성의 경우 14대 전반기에 125일이 걸려 역대 국회 중에서 원구성이 가장 오래 걸렸으며,

가장 최근인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88일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될 상임위원장 수를 정하고, 각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될 때마다 원구성으로 인한 국회 개원지연을 방지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본 의원의 입법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개정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국회법상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제128조제2항에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동 개정법률안의 당위성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8조는 행정부에 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권의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며, 또한 각 상임위 위원들이 해당 소관 정부부처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상시 자료요구를 하며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정부기관은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어 자료 제출 때문에 상호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국가기관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제출 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천 남구 갑 출신 홍일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징계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까지의 운영현황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안의 대부분은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특히 국회 회의장 내에서의 소동이나 폭력행사까지도 문제시 되지 않고 넘어가거나 징계 심사결과가 유명무실하여 '동료 의원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 등의 비난을 받는 등 공정한 심사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눈높이와 여론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 제소권과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윤리심사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학계·언론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기한과 본회의 의결기한을 지정함으로써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현행 제도상의 출석정지와 제명 사이의 편차를 줄였고,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내실화하고 이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서 본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원병 출신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4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불가능한 구조이고, 이는 곧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영장실질심사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번의 사례에서 될 수 있듯, 국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구인하여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여부에 법원이 사실상 구속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영장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먼저 거친 후, 관할법원의 판사가 검토의견이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체포동의안 의결에 있어 법적 판단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적 판단에 기인하지 않은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라북도 정읍 출신 유성엽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은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 등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통보의 효력이 권고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또는 용이한

법률개정 효과를 위하여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제출된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당해 대통령령 등을 수정·변경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정·변경이 어려운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법률의 위임사항 및 입법취지 등에 어긋나는 정부의 임의적 대통령령 등의 제정·개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입법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법률안의 의미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8)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주승용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12년 8월 6일 본 의원 외 13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종 자격급여의 신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을 유발하는 재정수반법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58조의2 신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광산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의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본 법률안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자력에 대한 규제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시 영등포갑 출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

고 세계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외국과의 통상 협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및 통상교섭의 조정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양국간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행정부의 영역인 '이행감독'을 넘어, 협정의 개정 또는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입법의 영역은 물론 협정 규정, 부속서 및 준거법에 대한 해석과 같은 사법의 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같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권한과 지위를 고려할 때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여 공직후보자 개인은 물론 통상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권성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국회는 쟁점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사를 관철시키거나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국회 폭력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상의 질서유지 규정만으로는 국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사태를 방지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를 통하여 국회 폭력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본 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행·공용서류 등의 무효·중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특수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의장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그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특별법의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본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행정부를 지도·감독하는 주요 통제기제로서 대의제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려면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고,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

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며, 그 이후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상임위원회의 필요에 따른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의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없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그 소관 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임위원회의 의결로도 상임위원회 소관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에서는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국정감사나 극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 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회법에서는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한 동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동 개정법률안의 당위성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삼권분립의 헌정체제하에서 국회는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고유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보고·자료요구권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정해놓은 국가기밀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실제로는 국가기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등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의안심사와 국정감사 조사 등의 정상적인 수행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선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소명 또한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국정통제 및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할 때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출석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증인의 불출석 등에 관하여 현행 규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동 법률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법률개정안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법안 심사를 통해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의 공직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인사청문 관련 자료가 인사청문회에 임박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자격검증 과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기관 종사자는 거부하지 못함으로써 인사청문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입니다.

제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다. 공직후보자가 위증의 죄를 범한 경우 이를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부적격자의 공직임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광산을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시설의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이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포함시키고자 본 법률안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자력에 대한 규제와 안전을 확보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서울시 영등포갑 출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외국과의 통상 협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및 통상교섭의 조정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양국간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행정부의 영역인 '이행감독'을 넘어, 협정의 개정 또는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하는 입법의 영역은 물론 협정 규정, 부속서 및 준거법에 대한 해석과 같은 사법의 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같은 통상교섭본부장의 권한과 지위를 고려할 때 통상교섭본부장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추가하여 공직후보자 개인은 물론 통상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인천 남동갑 박남춘 의원입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법에 의해 보좌직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 및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구민의 민원해결 등 각각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좌진의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좌직원으로 채용하여 의정활동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의무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회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이 아닌 다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산 동래구 출신 이진복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것으로 학계, 시민단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를 통해 논의된 결론을 법안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최초의 임시회 집회가 지연되어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제13대부터 18대까지 국회의장단의 평균 선출기간은 23일이었습니다.

15대 후반기의 경우 65일로 역대 국회 의장단 선출기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가장 최근인 18대 국회 전반기에는 41일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일하는 국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바램과는 달리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못하고, 임시회 집회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국회의원 수당등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적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국회의원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추는 본 법안의 입법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 개정안을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 등 11인이 지난 2012년 7월 18일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의원 입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입, 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검토, 발언 자료의 준비,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자질과 상관없이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친인척이 비록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보좌직원을 임명되는 것은 국민적 오해의 소지가 많아 바람직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불식하고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현재 임명되어 있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국회, 정책을 지향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일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회사무처법 제4조에는 국회사무총장의 임명절차 관련 규정이 없고, 사무총장의 권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사무처의 설치와 국회사무총장 임명에 대하여 국회사무처법이 모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21조가 근거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회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국회사무처법 제21조와 제65조의2가 개정되는 경우, 입법체계를 맞추기 위해

국회사무처법 제4조(사무총장)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총장의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그 임명은 국회사무처법을 개정하지 않고 국회법 제21조와 제65조의2를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동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12년 6월 20일 김광진 의원 등 20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국고의 지원을 받아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연로회원 지원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 교부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헌정회 운영비를 제외한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처럼 합리적인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 정착의 전체가 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 말씀드린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된 재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국회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 동료 위원 여러분!

동료 의원 45인과 함께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전직대통령이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5년)와 전직대통령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한 것인데,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 조성, 경호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사생활 보호와 통치정보 누설방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2)]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경호대상자의 수와 안전위협요소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원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운영위 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및 경찰청 훈령인 경호규칙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경호를 제공함.

2) 2011년 5월 30일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직대통령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3년간 비서관과 운전기사 1명씩을 둘 수 있던 것을 종신까지 둘 수 있도록 하였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임시국회에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을 비롯하여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정년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60세로 연장되었으나, 대통령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우, 아직까지 기존의 정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공공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호공무원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5세, 50세로 정해져 있던 5급 및 6급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각각 58세, 55세로 연장하고, 6년과 8년이었던 2급과 3급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4년, 7년으로 단축시키며, 10년과 14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4급과 5급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각각 12년, 16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받도록 함과 동시에 본연의 임무인 경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입니다.

현행규칙상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시 여성 위원을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회부된 경우 회부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징계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國會旗및國會배지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이한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와 63명의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국회는 2005년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제14조에서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국어인 한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기와 국회배지 등에 쓰여진 한자 ‘國’자를 한글인 ‘국회’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정부나 법원은 정부기나 법원기 등

에 ‘정부’, ‘법원’이라고 한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정부 및 법원과 같이 한글로 표기된 국회기 등을 가짐으로써 행정부, 사법부와 조화를 이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19대 국회는 이미 국회의원 선서문을 한글로 바꾸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개정을 통해 19대 국회는 국어인 한글을 존중하고, 그 모범을 실천하는 국회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말씀드린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본 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